

## 2021년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「청년취업 희망카드」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1년 5월 18일

대전광역시

### 1 사업 개요

○ 지원 대상 : 만 18세 ~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\*

\* 세부 자격사항은 반드시 '2. 신청 자격 요건'을 확인하기 바람.

○ 모집 인원 : 2,500명 / 생애 1회 지원

\* 상기 모집 인원은 1차 모집에 지원목표 2,500명이 선정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2차 모집 지원대상자는 1차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임.

○ 신청 기간 : <1차> 2021. 6. 1. ~ 6. 10. (17:00시, 온라인 신청 마감)  
<2차> 2021. 8. 1. ~ 8. 10. (17:00시, 온라인 신청 마감)

\* 상기 일정은 온라인 신청 기간이며, 마감일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,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. 단,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,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 불가로 탈락 됨.

○ 신청 방법 : 희망카드 홈페이지(youthpassdaejeon.kr)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

○ 지원 규모 : 최대 300만원\* 지원 / 월 50만원 × 6개월

\*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
⇒ 중단 사유 : 취업·창업,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, 유사사업 중복참여, 진로변경 (취업 → 진학, 유학, 입대 등 진로변경), 자진포기, 기타 개인사유 등

○ 지원 내용 :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

- 구직활동 지원 : 직접비(교육비, 면접비, 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 등), 간접비(식비, 교통비 등)

\* 구직활동 보고(지원 4개월, 6개월차 15일까지 제출), 연계 프로그램 지원(지원기간 중 1회 참여)

○ 지급 방법 :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(매월 1일, 50만 포인트)

○ 사용 방법 : 청년취업희망카드(전용 체크카드)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\*

\*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

- ①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: 카드 선 사용, 후 정산(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 방식)
- ② 포인트 결제 : 희망카드 홈페이지(youthpassdaejeon.kr)에서 '포인트 바로구매' 이용

○ 추진 절차

- 1) (선정 절차) 온라인 신청 → 서류 접수(등기 우편 제출) → 선정·심사(약 2개월 내외 소요) → 결과발표(7월, 9월) → 교육 및 약정체결(필수) → 지원개시
- 2) (지원 절차)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(매월 1일 배정 / 1개월 이내 카드발급) →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(지원기간 중 2회 제출) →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(1회 필수 참여) → 설문조사 → 지원종료(6개월 종료)

○ 사전 자격요건 확인

- 사업 신청 전 홈페이지 『자격 요건 확인』 에서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음

2

신청 자격

○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**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,**

(1) (연 령)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
\* 단, 연령은 온라인 신청 개시일 기준, 만 18세 ~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 
 <1차 모집> 주민등록상 1986. 6. 2.부터 2003. 6. 10.까지 출생  
 <2차 모집> 주민등록상 1986. 8. 2.부터 2003. 8. 10.까지 출생

(2) (거 주) 주민등록 기준\*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

\* 주민등록 초본 상, 타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 
 <1차 모집> 2020. 12. 10.이전 / <2차 모집> 2021. 2. 10. 이전이어야 함.

(3) (학 력) ①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 또는 ②대학교·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

① 최종학교 졸업(자퇴·중퇴·제적 포함) 후 2년 경과한 자

\* 단, 졸업(자퇴·제적·중퇴)한 자는 증명서 상 졸업(자퇴·제적·중퇴) 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

② 대학교·대학원 졸업학년 재학(휴학생 포함) 중인 자

\* 신청인이 제출한 학력 증빙서류 상 졸업학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

(4) (소 득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미만인 자\*

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보건복지부 고시(제2020-170호/2020.8.7.) 】

(단위:원,월)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8인 가구
직장	94,467	159,583	206,575	252,295	296,707	354,781	414,255	449,388
지역	69,399	160,445	220,777	277,765	329,659	393,994	456,308	494,952

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\*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

- ①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(가입자+피부양자수 합산) 확인
- ②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
- ③ ①의 가구원수와 ②의 고지금액으로 **150%미만 여부 판단**

☞ (예시) 6월 신청자 : '21. 5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8월 신청자 : '21. 7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

(5) (미취업)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(창업) 상태인 자\*

\*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 
 (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, 시간선택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불가)

\* 사업자 등록(휴업, 고유번호증 포함)이 되어 있는 경우,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
 (단,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)

○ 지원 제외 대상 :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(탈락사유)

- ◎ 최종학력 상 졸업(중퇴·자퇴·제적)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
- ◎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◎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
 - 단,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
- ◎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(휴업한 경우 포함)  
 - 단,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
- ◎ 본 사업과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, 유사사업 참여 종료(중단) 후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제외
- ◎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
 - 단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,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(해당기관 사전 문의)
- ◎ 2017년 ~ 2020년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(생애 1회 지원)

☞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'<붙임2> 지원 제외 대상' 참조

**신청 및 접수 방법**

○ 신청·접수 기간 : 총 2회 / <1차 모집> 6월, <2차 모집> 8월

【 청년취업희망카드 주요 모집 일정 (예정) 】

구분	온라인 신청	서류 접수	심사.선정	지원기간
<b>1차 (6월)</b>	<b>6. 1.(화) ~ 6. 10.(목)</b> (17시 신청 마감)	<b>6. 1.(화) ~ 6. 17.(목)</b> (18시까지 도착분)	6. 18.(금)부터 ~ (7. 20.이후 결과 발표)	'21. 8. 1. ~ '22. 1. 31. (최대 6개월간)
<b>2차 (8월)</b>	<b>8. 1.(일) ~ 8. 10.(화)</b> (17시 신청 마감)	<b>8. 2.(월) ~ 8.17.(화)</b> (18시까지 도착분)	8. 18.(수)부터 ~ (9. 23.이후 결과 발표)	'21. 10. 1. ~ '22. 3. 31. (최대 6개월간)

\* 상기 일정은 신청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○ 신청 및 접수방법 :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, 서류 접수(등기우편)

\* 서류 제출처 등 제출방법 세부사항은 '청년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'에 별도 안내  
☞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: youthpassdaejeon.kr

**[ 서류 제출 유의사항 ]**

- ◎ 반드시 온라인 신청하고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, 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 됨(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)
- ◎ 자격 요건 심사이므로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2021. 6. 1.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(8월 모집은 2021. 8. 1.이후 발급분)
- ◎ 제출 서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,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
- ◎ 택배, 이메일, 퀵 등으로 제출 불가(개인 정보 유출 우려)
- ◎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,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
\*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
- ◎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가 불가하므로 자동 신청 취소 또는 탈락(추후 재신청 가능)

○ 제출 서류 목록 :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심사되므로 서류 발급일자 유의

\* <1차 모집> 2021. 6. 1.이후 발급분, <2차 모집> 2021. 8. 1.이후 발급분

☞ (붙임) "구비서류 발급방법" 필독

심사항목	증빙 서류	비고
구직활동 계획 적정성	① 구직활동계획서 1부 (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제출)	*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인쇄 후 제출
연령 및 거주지	② 주민등록 초본	*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(선택발급 X)
	③ 주민등록 등본(전체 이력 포함)	*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
학력 (해당 서류 제출)	출업자 ④-1 졸업증명서 1부	*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
	최종학교 자퇴자 ④-2 자퇴확인서(제적증명서) 1부	* 최종학교 자퇴 후 2년 경과
	재학생 ④-3 재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수료증명서 중 1부(학년 표기 필수) * 대학원생 : 수료증명서, 수료증, 졸업예정증명서, 학위수여증명서 중 1부	* 졸업학년 증빙
미취업	필수 (해당자만 추가 제출) ⑤-1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(고용보험 / 상용조희) ⑤-2 근로계약서 (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)	* 가입이력 없어도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 * 해당자만 추가 제출
	가구원수	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)
가구 중위 소득	건강보험료	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) * <1차 > '21년 5월 고지액 기준 <2차 > '21년 7월 고지액 기준
	자격확인	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신청인 본인 자격득실확인서)
	(해당자만 추가 제출)	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(또는 의료급여증) 사본 1부
개인정보 열람 동의 (소정 양식)	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* 미제출, 미동의 시 심사 불가로 탈락
서류 체크 (별도양식)	⑩ 희망카드 <b>서류 체크리스트 1부</b>	

## 4

### 심사 및 선정 기준

- **심사 방법** :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\* 적합 여부 평가(정량, 정성평가 병행)
  - \* (선발기준) 나이(주민등록번호 기준), 거주지 및 거주기간, 미취업 여부, 가구기준 중위 소득, 타사업 중복참여 여부,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,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, 기타 서류 미비 등 심사
- **심사 기간** :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
- **최종 선정** :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 선정
- **결과 발표** : <1차> 7월 선정(7.20.이후 예정) / <2차> 9월 선정(9.23.이후 예정)
  - \* 단, 신청·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**결과발표 일정은 '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'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**
- **결과 안내** :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\*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'마이페이지' 확인
  - \*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: youthpassdaejeon.kr
  - \* 문자발송(알림톡 포함) 휴대전화 번호, 개인별 이메일은 **사업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정보로** 통보  
⇒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오기 입력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**선정자 필수 이행사항** : 온라인 동영상 교육 참여 및 약정체결(비대면 진행)
  - \* 상세 내용은 선정결과 발표 후, 희망카드 홈페이지 '공지사항' 게시 예정(필독)
  - \* 필수 이행과정(약정체결 및 교육) 미 이행 시 최종 탈락(반려) 됨

#### ◎ 2차 모집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\* 심사기준 적용

-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지원목표를 고려한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 우선 순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
- 우선순위 심사기준 :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자순 우선 선정  
(단, 소득분위 동점자는 장기 거주순 우선 선정)

## 5

### 기타 유의사항

-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, 기존 참여자(종료, 중단 등)는 재참여 불가합니다.
-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(탈락·반려) 됩니다.
-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(반려·취소)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. 단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(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)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,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취소(탈락)되며,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.
-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, 자격변동(취업·창업, 대전 이외의 지역 주소지 이전, 타 지원사업 참여 등)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, 자격변동 미신고,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,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.
-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희망카드팀 ☎ 042-719-8325, 8326, 8327, 8328)으로 문의하거나 '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Q&A' 로 문의 바랍니다.

[붙임1~5] 구비서류 발급방법, 지원제외대상, 가구소득 세부산정방법,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

## [붙임 1] 구비서류 발급방법

필수 서류	발급 방법
① 구직활동계획서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
② 주민등록 초본	·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
③ 주민등록 등본	· 온라인 신청 기간 (1일~10일)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④ 졸업증명서, 제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	· 해당대학 행정실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 · 온라인 신청 기간 (1일~10일)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⑤-1.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고용보험 / 상용조회)	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이용할 경우 ①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이력) ② 출력할 날짜 : <1차 모집> 2021.01.01. ~ 2021.06.10. <2차 모집> 2021.01.01. ~ 2021.08.10. ·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이용할 경우 ① 개인/일반근로자 로그인(공동인증서 필요) ② 증명원 신청/발급 ③ 개인>고용-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선택(보험구분 : 고용 / 조회구분 : 상용) 후 조회 *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 후 제출
⑤-2.근로계약서 (해당자만)	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(근로중인 경우) 주 30시간 미만 근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· 온라인 신청일(1일~10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
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	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이용(T.1577-1000) ① 개인 로그인(본인 또는 가입자 공인인증서 필요) ② 민원여기요>개인민원>증명서 발급/확인
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- 자격확인서 (모두 선택) - 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 체크 / 2021년 전체분 발급)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발급)
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*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,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,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· 온라인 신청일(1일~10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 신청월 기준 2021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
⑩ 서류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)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작성 후 제출

## [붙임 2] 지원 제외 대상

구분	지원 제외 대상
학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최종학력 상 졸업(중퇴·자퇴·제적)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</li> <li>-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 재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, <b>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 경과하여야 함</b></li> <li>⇒ 최종학력(고등학교 이하, 대학교, 대학원 등) 졸업(중퇴·자퇴·제적) 후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고, 기준 중위소득이 120%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'국민취업지원제도' 지원대상</li> <li>◎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대상</li> <li>- 졸업학년은 학교별 학제에 따라 판단하며, 서류 상 졸업학년 재학 중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외(또는 탈락사유) 대상 (대학원 박사과정 지원 제외)</li> </ul>
취·창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제외 대상</li> <li>- 고용 형태,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으며, 시간선택제 정규직은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되며,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해도 탈락 또는 중단 사유</li> <li>* 단,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(국가장학사업),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</li> <li>◎ 사업자등록 상태의 창업자는 제외 대상(휴업 포함)</li> <li>-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참여 제외</li> </ul>
중복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 참여 종료(중단) 후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</li> <li>- 정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해당 사업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(단, 6개월 경과 시 참여 가능)</li> <li>* 국민취업지원제도 1·II유형(구직촉진수당, 구 취업성공패키지),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, 실업급여 수급자, 청년내일채움공제, 내일배움카드, 국비지원 교육, 국가보훈처 재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, 직접일자리 사업, 그 외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사업 참여자</li> </ul>
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</li> <li>- 단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,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,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(해당기관 사전 문의)</li> </ul>
재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2017년 ~ 2020년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(생애 1회 지원)</li> <li>-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거나, 지원 도중 중단한 자(취업, 부정수급 등)</li> </ul>

**[붙임 3] 가구소득 세부 산정방법**

산 정 방 법	
1) 가구원수 산정방법 :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	
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(또는 모)인 경우 : 아버지(또는 모)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	
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: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	
2) 건강보험료 산정방법	
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②신청월 기준 전월분 ③고지금액 확인	
《 1차 모집 예시 / 6월 신청자 》	
<예시 1> '21년 6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(건강보험 : 21. 5. 1.이전 취득)	
1) 가수원수 : <u>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'21년 5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</u>	
2) 건강보험료 : <u>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'21년 5월 고지금액 확인</u> (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)	
3)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	
<예시 2> '21. 5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(건강보험 : 21. 5. 1.이후 변경)	
1) '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' 확인 (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)	
2) 가수원수 : <u>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'21년 5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</u>	
3) 건강보험료 : <u>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'21년 5월 고지금액 확인</u> (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)	
4)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	
《 2차 모집 예시 / 8월 신청자 》	
<예시 3> '21년 8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(건강보험 : 21. 7. 1.이전 취득)	
1) 가수원수 : <u>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'21년 7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</u>	
2) 건강보험료 : <u>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'21년 7월 고지금액 확인</u> (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)	
3)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	
<예시 4> '21. 7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(건강보험 : 21. 7. 1.이후 변경)	
1) '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' 확인 (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)	
2) 가수원수 : <u>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'21년 7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</u>	
3) 건강보험료 : <u>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'21년 7월 고지금액 확인</u> (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)	
4)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	

**[붙임 4]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(예시)**

지원 항목	지 원 범 위	지원 불가(부정수급 조치)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창업 진로 및 창업교육비, 자격증 취득 학원비 등</li> <li>·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, 면접요령 등 컨설팅 비용</li> <li>· 학원 사물함 비용 등은 지원가능</li> <li>☞ <b>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</b></li> <li>* 단, 헬스장, 수영장 등 체력단련 비용은 취업 희망분야 관련성 입증 필요로 소명환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진학관련 입학원, 대학등록금 등 (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등 록비 포함)</li> <li>· 본인 외 수강한 교육비</li> <li>· 교육비 환불내역 미신고 등</li> </ul>
면 접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면접, 취업관련 시험 응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· 20만원 미만 정장 및 구두구입 (지원 중 1회)</li> <li>* <b>면접용 정장대여 : 정장대여사업 참여 가능</b></li> <li>· 숙박비 : 시외 지역 면접·시험 응시 등으로 숙박(1박)</li> <li>· 면접을 위한 아미용비, 이력서 사진촬영 등</li> <li>· 기타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☞ <b>면접 관련성 확인 위해 금액 관계 없이 소명환급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회 20만원 이상 면접비 결제 건</li> <li>· 면접 목적 외 사용 건</li> <li>· 면접비 환불내역 미신고 등</li> </ul>
자격증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·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·등록비 (접수비, 등록비, 재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 포함),</li> <li>· 각종 시험 응시료 등(어학, 한국어 등)</li> <li>☞ <b>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 결제 불가</li> <li>예시) 토익(o) 토폴(x)</li> <li>· 시험응시료 환불내역 미신고 등</li> </ul>
도서 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·창업 준비를 위한 도서, 자기개발, 진로탐색 등에 필요한 도서 구입 비용(인쇄비, 제본비 가능)</li> <li>☞ <b>자산성 물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 가능 항목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명환급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 취미 및 자산성 물품 구매 건 (예시) 잡지류, 만화, 성인물, 음반, 중등 이하의 교재, 다이어리, 달력, 가계부, 사무용품 등</li> </ul>
교 통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외 교통비 : 면접, 시험 등 취업 활동을 위한 기차, 고속(시외)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</li> <li>· 시내 교통비 : 후불교통*(시내버스, 지하철), 택시비 등</li> <li>* <b>후불교통은 희망카드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</b></li> <li>☞ <b>교통비 사용 건은 자동환급</b></li> <li>· 개인적 사유(신용불량 등)로 희망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유비, 전기충전비, 선박/항공 요금, 고속도로 통행료 등</li> <li>· 지원 종료일 이용한 후불교통건</li> <li>* 지원기간 종료 후 청구되는 건으로 지원불가</li> </ul>
식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월 20만원 한도 이내 사용 가능</b>(식비 한도는 이월 불가)</li> <li>☞ <b>일반음식점 식비 자동환급, 일부 업종은 지원 불가 항목 확인을 위해 소명환급</b></li> <li>* 마트, 편의점, 슈퍼, 백화점 등 일부 업종 소명환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음주비, 담배, 건강기능식품 등</li> <li>· 생활용품(주방용품 등) 구입비 등 자산성 물품 구매 지원불가</li> </ul>

\* 면접비, 도서구입비, 교육비(30만원 이상 결제) 등 소명환급 건은 증빙자료 보관 후 제출(필수)

☞ 자세한 내용은 '2021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설명서' 참고(선정 후 약정체결 교육 시 배포)

**[붙임 5] 청년취업희망카드(하나체크카드) 사용 시 제한업종(예시)**

업종코드	업종명
<b>의류/잡화</b>	
1104	아동.유아복
1105	아동복
1108	모피.무스탕
1201	커튼.카펫.수건
1202	침구및수예품
1402	시계.귀금속
1403	안경.광학제품
1405	가방.핸드백
1502	유희.사치용품
<b>건강식품</b>	
2201	건강보조식품
2202	인삼전문점
2203	한국인삼공사
<b>주점</b>	
2601	일반주점
2602	주류전문점
2603	단란주점
2604	기타주점
<b>전자/사무</b>	
3104	기타전자제품
3201	컴퓨터및소프트웨어
3202	통신기기
3203	철재.사무용가구
3204	기타사무용기기
<b>인테리어</b>	
3405	실내장식(인테리어)
3501	중고품판매점
3502	기타가정용품
3503	기타장비임대
<b>부동산/서비스</b>	
3601	기타부동산관련업
3602	부동산중개
3701	사업시설청소관리
3702	경비업
3801	웨딩토탈서비스

업종코드	업종명
<b>의료</b>	
4101	종합병원
4102	일반병원
4103	한방병원
4401	의약품판매
4402	약국
4403	한약방
4501	기타약품.의료기기
<b>유통/판매</b>	
5104	면세점
5504	PG대학등록금
5506	PG(공공서비스)
5601	홍소핑
5602	통신.방문판매
5702	방문판매
5703	다단계
<b>숙박/여행</b>	
6101	호텔(특급)
6201	여행사
6202	여행지원서비스
6204	차량임대(렌터카)
<b>교통/자동차</b>	
6305	여객선
6306	항공사
6307	외항항공사
6308	기타승객운송업
6501	차량부품.용품
6502	자동차정비
6503	자동차전문수리
6702	세차장
6703	차량견인서비스
6704	도로시설운영
6705	고속도로통행카드
6601	주유소
6602	주유소(LPG)
6603	기타연료판매

업종코드	업종명
<b>문화/취미</b>	
8102	문구.사무용품
8103	비디오.음반
8104	악기판매점
8105	기타레저.스포츠용품
8107	카메라.캠코더
8108	오락용품판매
8117	완구
8118	충포류
8119	화방.표구점
8121	전문스포츠용품점

스포츠/레저	
8301	경기장
8302	골프장
8303	스키장
8307	볼링장
8308	당구장
8309	골프연습장
8310	기타취미.레저.스포츠
8401	성인오락실
8402	노래방
8403	무도장

업종코드	업종명
<b>유희</b>	
8601	유희주점
8602	나이트클럽
8603	안마시술소

보험/서비스	
9101	생명보험
9102	손해보험
9103	기타보험
9201	전화요금
9202	통신재판매업
9203	우편요금
9204	공공서비스.요금
9208	인터넷서비스요금
9301	기타화물운송업
9401	영상/음향물제작
9511	기타전문서비스

상품권/기타	
9604	회원권중개/판매
9605	일반상품권
9606	온라인상품권
9802	기타개인서비스

\*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 등 제한 업종이 있으므로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 지원제외항목 숙지 필수(사용제한 업종·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, 지급 중단 등 조치)

\*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, 부정수급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